

노인학대 예방교육 자료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

2.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지침

- 요양원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시행해 나간다.
-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어르신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 요양원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어르신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지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시설종사자는 생활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 운영자는 바로 학대 의심 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한다.
-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해

야 한다.

- 본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한다.

3.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1)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법 제3조 제1항)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2) 방문요양서비스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복지법 제31조) 및 노인복지상담원 (노인복지법 제7조)

3)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 치료 · 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58조)

4)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관, 부랑인과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제34조)

6)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7)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8)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10)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1)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12) 의료기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1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14)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15)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16)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4.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방법

▶ (경기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일반전화 이용 : 1577-1389
- 내방 및 서면신고
- 인터넷 홈페이지 신고접수 <http://www.cn1389.or.kr>

5.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1)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을 폭행한다.
-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
- 노인의 신체를 강제로 억압한다.
- 신체적 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행위로 노인을 협박하거나 위협한다.
- 약물을 사용하여 노인의 신체를 통제하거나 생명을 저해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거나 수행하기 어려운 노동을 하게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설명할 수 없거나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상처 및 부상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
- 머리카락이 뽑힌 흔적 또는 머리 부분에 출혈한 흔적
- 영양부족 상태 또는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 이상한 체중감소
- 노인 바깥출입 거의 없거나 집 주변에서 배회함
- 묶인 흔적 또는 상처
-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 증세가 심함

2) 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행해지는 정서적 침해 행위로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의 소속과 애정, 자존의 욕구 실현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과의 접촉을 꺼린다.
- 노인의 사회관계 유지를 방해한다.
- 노인을 위협 · 협박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한다.
- 노인과 관련된 결정 사항에 대해서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시킨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흥분 또는 화가 난 분노의 모습
- 눈물을 머금거나 우는 모습
- 잠을 못 자거나 안절부절못하는 불안한 모습
- 무반응 또는 무표정한 모습
- 극단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보임
-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모습
- 말하기를 꺼리거나 주저함
- 가족 또는 보호자 등과 대화가 거의 없거나 눈치를 봄
- 사람을 만나거나, 외부 활동을 피하거나 꺼림
- 다툼, 욕설, 큰소리가 자주 들림

3) 성적 학대

노인이 성적으로 강제적 폭력 또는 행위를 겪는 것과 노인에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대 행위자의 행위로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에게 성폭행한다.
- 노인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표현이나 행동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 속옷이 찢어짐
- 외부 성기 부분이나 항문 부위의 타박상이나 하혈
-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함

- 성별
- 분노 또는 수치심
- 특정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4)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 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노인의 소득 및 재산,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 노인의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
- 노인의 사용 또는 관리에 관한 결정을 통제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의 재산이 타인의 명의로 갑자기 전환됨
- 노인을 강요하거나 노인의 허락 없이 재산 관련 서류를 처리함
-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 노인 부양 전제로 재산을 증여했으나 부양하지 않음
- 개인 귀중품이 없어짐
- 은행계좌의 현저한 혹은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체납된 공과금 및 고지서가 발견됨
- 노인의 임금이 체불됨
- 자기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5) 방임

노인의 의식주 문제를 비롯해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해 부양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또는 노인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서비스에 대해 노인 스스로 총체적 거부(자기방임)의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의·식·주 등 일상생활 관련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
-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한다.
-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
- 노인 스스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대소변 냄새, 악취, 땀띠,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된 상태
- 머리, 수염, 목욕, 손톱, 옷 입기 등의 신병 처리가 안 된 상태
- 노인 주변 환경 건강이나 안전의 위험 증후
- 의복 또는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환경
- 식사를 거르는 등의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
- 기본적 생활비 지원 거의 없음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음
- 생명에 위협이 될 의식주 거부를 노인 스스로 함

6) 유기

의존적인 노인을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 **구체적 증상**

-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한다.

● **대표적 예측 징후**

- 노인이 낯선 장소에서 배회하고 있음
- 노인이 자신의 주거지 및 연락처를 알지 못하는데 버려져 있음
- 가족 및 보호자가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하지 않음
-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 두절

한사랑실버밸리요양원